

2004.8.4(수)
브리핑 자료

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기본골격

2004. 8. 4

농 립 부

목 차

1. 농업협상 진행경과	1
2. 시장접근	2
3. 국내보조	4
4. 수출경쟁	5
5. 평가 및 향후 대응	6

<참고 1>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요지

<참고 2> 기존 초안과 기본골격 비교

1. DDA 농업협상 진행경과

□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DDA 협상 출범

※ 당초 협상일정 : ① 세부원칙(Modality) 수립('03.3까지) ② 이행계획서 제출 ('03. 9, Cancun 각료회의까지), ③ 협상완료('04말)

○ 2003.3월 농업협상 그룹 의장(Harbinson)은 당초 시한내 협상 세부원칙(Modality) 합의를 위해 비교적 완벽한 형태의 초안을 마련하고 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

○ 2003.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간단계로 기본골격만이라도 합의하는 안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

□ WTO는 금년 3월부터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(framework)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 진행

○ 이 과정에서 WTO 일반이사회 오시마의장은 7월 중순까지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기본골격 초안(오시마 안)을 제시(7.16)

○ 동 초안을 기초로 회원국과 주요 협상 그룹간의 마무리 논의를 거쳐 7.31일 일반이사회에서 확정됨

※ 당초의 협상시한인 2004말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고, 제6차 WTO 각료회의를 2005.12월 홍콩에서 개최기로 함

2. 시장접근

□ 관세감축 공식

○ 관세 수준에 따라 대상품목을 여러 구간으로 분류하여 감축 하되,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

- 선진국·개도국 모두에게 구간별 공식 적용
- 관세구간의 수와 경계, 각 구간에 적용되는 관세감축방식 등은 추후 협상과제로 제시되었으며,
- 우리나라 등 농산물 수입국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반대 의사를 표시해 온 관세상한 문제는 추후 평가과제로 명기

※ 고관세 품목이 많은 우리는 향후 세부원칙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축성을 확보하고 관세상한 제도가 설정 되지 않도록 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과제

<우리나라 주요 고관세 품목 현황>

구 분	실품목(누계)	HS 10단위(누계)	비 고
300% 이상	25개	94개(6.5%)	마늘(360%), 참깨(630%), 쌀보리(300%), 겉보리(324%)
250% 이상	31개	108개(7.4%)	고추(270%)
200% 이상	39개	124개(8.5%)	수삼(223%), 밤(219%)
100% 이상	47개	142개(9.8%)	분유(176%), 감귤(144%)

□ 민감품목

- 자기선정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수(appropriate number)의 민감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관세감축과 TRQ 증량을 연계하여 의무 부과
- 민감품목의 TRQ 증량과 고율관세(out-of-quota tariff rate)에 적용되는 최소감축률은 추후 협상과제로 제시

※ 우리나라의 TRQ 품목

구분	품목수	품목명
TRQ 품목	63개 품목 (HS 10단위 190개)	쌀, 고추, 마늘, 양파, 참깨, 생강, 인삼, 밤, 대두, 분유, 고구마, 감자, 낙화생, 녹두·팥, 대추 등

- * 쌀은 관세화유예품목으로 쿼터밖 관세(out-of-quota tariff rate)가 없음
- * 쌀 제외시 우리나라 이중관세 품목은 62개임(HS 10단위 174개)

□ 개도국우대

- 구간별 관세감축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낮은 감축율을 적용하고 개도국이 지정하는 적절한 수(appropriate number)의 특별품목(Special Products)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신축성 부여
- * 특별품목 적용을 위해서는 개도국 지위 유지가 선행되어야 하며, 특별품목관련 지정요건은 추후 협상에서 보다 구체화

3. 국내보조

□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

- 감축대상보조(AMS), 최소허용보조(de-minimis), 생산제한 직접지불(Blue box)를 무역왜곡 보조로 규정하고 이를 모두 합한 총액을 감축
 - 동 보조 총액 수준에 따라 구간별 감축방식(tiered approach)을 도입하되 보조 수준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함
 - 이행 초년도와 후속 이행기간동안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80%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

□ 감축보조(AMS)

- AMS 수준에 따라 구간별 감축방식을 도입하되,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개념 도입
- 품목별 AMS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을 감축토록 함으로써 품목간 전용을 제한

※ 우리나라의 경우, AMS 양허액 대비 평균 90%이상이 쌀 관련 보조임

□ 최소허용보조(de-minimis)

- 최소허용보조 감축은 개도국 우대원칙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

※ 우리나라는 '01년 기준으로 소(송아지생산안정제), 마늘(마늘수매지원) 등 20여개 품목에 de-minimis 보조를 지급하고 있지만, 대부분 품목 보조액이 생산액의 1% 내외(품목불특정보조 : '01년 총생산액 대비 1.22%)

□ 생산제한 직접지불(Blue Box)

- 농정개혁 수단으로서 Blue Box의 역할 인정
- 기존의 Blue Box에 대해서는 요건을 강화하였으며, 더불어 생산제한을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Blue Box를 추가
 - 다만, 지급요건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에서 재검토하기로 함
- 과거 일정기간 동안 농업총생산액의 5%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하였으며, 기존의 사용실적이 없던 국가도 도입이 가능

□ 허용보조(Green Box)

- 허용보조요건과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
 - 농업의 비교역적기능(Non Trade Concerns)의 절적인 고려 명시

4. 수출경쟁

- 일정 시점까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
- 지금까지 개도국에만 허용되던 수출보조(농업협정 제9.4조)는 유지하되 “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가 철폐되는 시점을 지나서 합리적인 기간까지” 인정한다는 단서 추가

※ 우리나라는 현재 과실, 화훼, 김치, 인삼 등에 선별비, 포장비, 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('01년 260억원)

5. 평가 및 향후 대응

- 이번합의로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(Framework)이 마련됨으로써 협상진전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
 - 그러나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세부쟁점들이 후속 협상 과제로 남아있어 현단계에서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있음
- 그동안 협상과정에서의 우리 노력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긍정적인 면과 미흡한 면을 동시에 포함
 - 관세수준이 높은 품목은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임
 - 국내보조분야에 대해서는 종래의 감축대상보조(AMS)외에 최소허용보조(De minimis)가 감축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담요인이나 감축 과정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신축성이 인정됨
 - 신규로 블루박스 보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도 긍정적
- * 대상품목은 후속협상의 내용을 감안하면서 추후 검토 대응
- 향후 후속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쟁점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을 최소화이며, 특히

-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던 관세상한 설정 저지
 - 민감품목의 신축성을 제약하는 TRQ 증량 최소화
 -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(SP)의 범위와 신축성 확대
 - De minimis의 감축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대응 예정
- 농업인, 농민단체, 언론계, 학계 등에 기본골격 타결안 및 향후 대응계획 홍보 추진
- DDA 농업협상 관련 세미나 개최, 농민단체 설명회, 시·도 순회 지방설명회 개최 추진
 - 이미 수립된 농업·농촌종합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향후 협상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정하는 작업 지속
- 이번에 합의된 기본골격(Framework)을 토대로 향후 전개될 세부원칙(Modality) 협상을 위해 품목·정책별 정밀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

<참고 1>

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요지

가. 시장접근

□ 관세구간 설정 및 관세감축의 원칙

-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감축하는 구간방식 (Tiered formula)을 채택
 - 감축기준세율 : 양허관세
- 고관세 품목은 더 많이 감축(deeper cuts in higher tariffs)하되 민감 품목에 대한 신축성 인정
 - * 관세구간의 수와 경계 및 구간내 감축방식은 추후 협상
- 관세상한 설정 문제는 추후 평가과제로 남김

□ 민감품목(Sensitive Products)에 신축성 부여

- 적절한 수(an appropriate number)의 대상품목을 각국이 선정하여 제시
- 민감품목은 실품목(each product)별로 TRQ 증량과 관세감축의 조화를 통해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
- TRQ 확대는 관세감축 공식에서 일탈정도(deviations)를 고려하여 추후 협의될 기준과 규칙에 따라 결정

□ In-quota관세 감축 및 TRQ 개선

- 현행 TRQ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, In-quota관세는 감축 또는 철폐
- 경사관세, 관세단순화(Tariff simplification), SSG는 추후협상

□ 개도국우대(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)

- 관세감축방식, 낮은 관세감축률 적용, 민감품목의 수 및 취급, TRQ 증량, 이행기간에서 선진국보다 우대 명문화
- 개도국에 있어 특별품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신축성 부여
 -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(Special Products)을 지정하여 제시
 - 선정기준 및 대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구체화
- 개도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제도(SSM) 설정

나. 국내보조

□ 기본원칙

- 보조수준에 따라 다른 감축공식을 적용하되(Tiered Formula)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는 더 많은 감축의무를 이행
- 감축대상보조(AMS) 감축과 함께 AMS와 최소허용보조(de-minimis), 블루박스보조를 합산한 무역왜곡보조의 총액에 대한 감축의무 부과
- 개도국 우대에 대하여는 긴 이행기간,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고, 개도국 우대 국내보조(농업협정 제6.2조)는 유지 등

□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

- 구간공식(tiered formula)에 따라 AMS, de-minimis, 블루박스의 총액을 감축하되,
- 이행 초년도와 후속 이행기간동안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80%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

□ 감축보조(AMS)

- 구간별 감축공식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조를 가진 국가는 더 많이 감축
 - 품목별 상한 설정 및 일부 품목의 경우 상한수준 감축

□ 최소허용보조(de-minimis)

- 최소허용보조 감축은 개도국 우대원칙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
- 다만, 거의 대부분의 de-minimis를 자원부족농·생계농을 위한 지지에 제공하는 개도국은 감축면제

□ 블루박스 보조

- 농정개혁의 수단으로서 블루박스의 역할 인정
- 블루박스 보조의 도입 조건을 규정

<생산제한을 전제로 한 직접지불>

- 고정된 면적과 단수에 기초할 것, 또는
- 고정된(fixed and unchanging) 기준년도 총 생산액의 85%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일 것, 또는
-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지불일 것

<생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직접지불>

- 고정된 면적과 단수에 기초할 것, 또는
-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지불일 것, 그리고
- 고정된 기준년도 총 생산액의 85% 이하에 대한 지불일 것
- 블루박스 보조의 지급한도는 과거년도 농업총생산액의 5%로 규정
- 블루박스 보조 지급실적이 있는 국가뿐 아니라 잠재적인 사용국에도 상한까지는 사용가능함을 명시

□ 허용보조

-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도록 요건을 재검토 및 명확화하고 NTC의 적절한 반영
- 이행 점검 및 감독 체제 보완

다. 수출경쟁

□ 기본원칙

- 합의된 시점까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 및 여타 수출지원 정책의 규율 강화

□ 철폐대상 수출보조

- 양허된 수출보조와 180일 이상의 상환기간을 가진 수출신용, 최소이자율, 위험프리미엄 등에 대한 규율에 어긋나는 수출신용
 - * 180일 이내의 수출신용 등을 규율하기 위한 조건을 추후 합의
- 정부의 재정지원과 손실보전 등 수출국영무역의 무역왜곡적 관행
- 잉여농산물 처분 등 향후 마련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원조

□ 개도국우대

- 긴 이행기간 부여
-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유지(농업협정 제9.4조)
 - 모든 종류의 수출보조 철폐이후 협상되는 적정한 기간동안 존치
- 국내소비자 가격안정과 식량안보 확보에 관련되는 개도국의 국영무역기관(STE)의 독점적 지위유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

☐ 예외적인 상황 고려

- 일정한 요건과 협의절차에 따라 회원국간 일시적인 금융지원 약정 가능

라. 기타

☐ 신규 가입국

- 신규 가입국의 특별한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신축성을 보장하는 조항 신설 추가

☐ 감시와 감독

- 농업협정 제18조는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 필요

☐ 미결쟁점

- 분야별 자유화(Sectorial initiatives), 수출세, 지리적표시 등
- 수출금지 및 제한(농업협정 12.1조) 규율 강화 조항 추가

기존초안과 기본골격 비교

가. 시장접근

구분	Harbinson 초안	Derbez 초안	기본골격
○ 관세감축	○ 구간별 감축률 접근방식 - 선진국 3단계, 개도국 4단계 - 평균 40~60%, 최소 25~45% 감축 * 개도국은 선진국의 2/3 적용	○ 세 그룹으로 나눈 혼합방식 - 구간별 UR방식, 스위스공식, 무세화(개도국 0~5%) 적용 ○ 관세상한을 설정하거나, R/O 방식을 통해 TRQ 증량 등 추가적 시장접근 확대 보장 - 단, 일부 NTC품목은 관세 상한적용 배제	○ 선진·개도국 단일 접근방식 - 관세구간별 차등감축방식 (tiered formula) * 구간수, 구간별감축방식 등은 추후 협의 ○ 관세상한은 추후 평가 필요
○ 민감품목 신축성부여	<선진국> ○ 해당없음 <개도국 : SP품목> ○ 평균 10%, 최소 5%감축, TRQ증량면제 - 대상품목은 스스로 선택 ○ 이행기간 2배	<선진국> ○ 해당없음 <개도국 : SP품목> ○ 최소 []% 선형감축, TRQ 증량면제 - 단, 이미 관세가 상당히 낮으면 감축 면제	<선진국> ○ 품목의 자율선정권 인정 - 적절한 수(appropriate number)에 대해 인정 ○ TRQ 증량과 관세감축을 통한 시장접근 개선 - 품목별 TRQ 증량 - 최저감축률 적용 <개도국 : SP품목> ○ 보다 많은 신축성 부여 ○ 적절한 수에 대해 인정 ○ 선정기준 및 대우는 추후 협상에서 보다 구체화
○ TRQ	○ TRQ를 '99~'01년 평균 소비량의 10%까지 확대 - 품목간 신축성 부여 ○ 개도국은 6.6%	○ In-quota세율 []% 감축	○ 현행 TRQ 관리 개선 ○ In-quota 세율 감축 또는 철폐
○ SSG/SSM	○ SSG : DDA이행종료후 철폐 ○ SSM : 반영	○ SSG : 미합의 ○ SSM : 반영 - 대상품목, 적용조건은 추후협상	○ SSG : 추후 협의 ○ SSM : 반영 ○ 종가세의 종량세 전환 등 관세체계의 단순화는 추후 협상

나. 국내보조

구분	Harbinson 초안	Derbez 초안	기본골격
○ 총액보조감축		○ 무역왜곡적 국내보조 총액 감축 - 2000년 총액 상한	○ 무역왜곡적 국내보조 총액 감축 - 구간별 감축(tiered formula) - 이행초년도 20% 감축 ※AMS+de-minimis+블루박스
○ AMS	○ 선진국: 5년간 60% 감축 - 품목별 AMS는 '99~'01년 평균지급액 초과 불가	○ []%~[]% 총액감축 ○ 품목특정 AMS수준에 상한 도입 -[]년 동안의 평균수준	○ 구간별 감축(tiered formula) 공식에 따라 높은수준 보조 더 많이 감축 ○ 품목특정 AMS 상한 도입 및 일부 품목 상한 감축
○ Blue Box	<선진국> ○ 5년간 50% 감축하거나 AMS에 포함시켜 감축 <개도국> ○ 10년간 33% 감축하거나 이행5차년도에 AMS에 포함시켜 감축	○ “생산제한”전제 없는 변형된 형태의 Blue box 도입 ○ '00~'02 농업총생산액의 5% 수준으로 상한설정 후 추가 감축	○ 현행 농업협정의 블루 박스 요건을 강화 ○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블루 박스 도입 ○ 과거 일정기간 농업 총생산액의 5% 상한 설정
○ de minimis	○ 선진국 : 5년간 매년 0.5%씩 감축 ○ 개도국 : 현행 유지	○ 선진국 : []% 감축 ○ 개도국 : 감축면제	○ 선진국 : []% 감축 - 개도국우대 고려 ○ 자원부족농·생계농에 대한 de-minimis의 중요성 고려
○ Green Box	○ 기본틀 유지하되, 요건 강화	○ 생산 또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최소가 되 도록 기준 재검토	○ 생산에 미치는 무역왜곡적 영향이 없거나 최소가 되도록 기준 재검토 및 명확화 -NTC 충분히 고려

다. 수출경쟁

구분	Harbinson 초안	Derbez 초안	기본골격
○ 수출보조	○ 재정과 물량 기준 감축 - 총수출보조액의 50% 품목 · 선진국 : 5년간 감축 · 개도국 : 10년간 감축 - 여타 품목 감축 · 선진국 9년, 개도국 12년	○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수출보조 : []년에 걸쳐 철폐 ○ 기타 품목 : 철폐를 전제로 감축	○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 및 여타 수출지원정책 규율 강화 ○ 양허된 수출보조 철폐
○ 수출신용	○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고 위배되는 경우 감축의무 부과	○ 개도국 관심 품목에 대한 무역왜곡적 수출신용 : []년에 걸쳐 철폐 * 무역왜곡적 수출신용 판단근거 : 상환기간 ([]개월) ○ 기타 품목 : 철폐를 전제로 감축	○ 무역왜곡적요소 철폐 - 상환기간 180일 이상 또는 최소이자율, 위험프리미엄 등에 대한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수출신용 철폐
○ 식량원조	○ 무상공여, 상업적 거래와 연계 금지	○ 상업적 거래를 저해해서는 안됨	○ 향후 수립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원조 철폐 - 잉여농산물 처분이나 상업적 판매 금지 등 ○ 국제기구의 역할, 무상공여 문제는 추후 협상
○ 수출국영무역	○ 가격차별행위, 정부의 재정적 특권 등 금지	○ 수출국영무역에 의해 제공되는 수출보조에 대해 수출보조에 상응하는 감축의무 적용	○ 무역왜곡적 관행 철폐 - 정부의 직·간접적인 재정지원 등
○ 수출제한 및 수출세	○ 선진국 - 규범외 신규도입금지 ○ 개도국 - 규범내 운영가능	○ 현행 농업협정 12.1조 강화방안 추가 논의	○ 현행 농업협정 12.1조 강화방안 추가 논의
○ S&D	○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(농업협정 9.4조) 유지	○ 긴 이행기간 적용 ○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(농업협정 9.4조) 유지	○ 긴 이행기간 적용 ○ 개도국우대 수출보조 (농업협정 9.4조) 유지 ○ 개도국 수출국영무역에 대해 의무 면제